

의안번호	제 819 호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영주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18년 6월 7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9

발의연월일 : 2018년 6월 7일

발 의 자 : 김영주, 이양섭,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 9, 10, 11조)
-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 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 14조까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 31 호
-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검토
-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

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권리보장 지원 사업

-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 라.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복지 지원 사업

-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 라.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 마.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 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3.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 다.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4.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자조모임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당사자 자조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직업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시·군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연계 업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그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

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발달재활, 발달장애인가족, 공공후견서비스, 발달장애인센터 운영 등

3. 관련조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바우처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발달장애인가족휴식 지원
- 공공후견 및 심판절차비용 지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국·지방비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바우처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발달장애인가족휴식 지원
- 공공후견 및 심판절차비용 지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도비 지원>

-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도·시군비 지원>

-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5,082,400	5,450,288	5,657,462	6,116,047	6,425,969	28,732,166	
국비	2,582,080	2,634,202	2,636,223	2,779,233	2,828,178	13,459,916	
도비	979,696	1,113,962	1,158,344	1,270,873	1,349,523	5,872,398	
시군비	1,520,624	1,702,124	1,862,895	2,065,941	2,248,268	9,399,852	
세출	5,082,400	5,450,288	5,657,462	6,116,047	6,425,969	28,732,166	
발달재활,언어발달	3,193,286	3,257,152	3,222,295	3,388,741	3,456,515	16,517,989	
부모심리상담	21,114	21,536	21,967	22,406	22,854	109,877	
가족휴식지원	80,000	81,600	83,200	84,900	86,600	416,300	
공공후견,심판절차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88,000	500,000	550,000	600,000	600,000	2,738,000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50,000	
자조모임 활성화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직업훈련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주거지원 사업	240,000	480,000	720,000	960,000	1,200,000	3,600,000	
평생교육 지원	910,000	910,000	910,000	910,000	910,000	4,550,000	
재원 조달	5,082,400	5,450,288	5,657,462	6,116,047	6,425,969	28,732,166	
의존재원	소계	2,582,080	2,634,202	2,636,223	2,779,233	2,828,178	13,459,916
	보조금	2,582,080	2,634,202	2,636,223	2,779,233	2,828,178	13,459,916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계	979,696	1,113,962	1,158,344	1,270,873	1,349,523	5,872,398
	지방세	979,696	1,113,962	1,158,344	1,270,873	1,349,523	5,872,398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1,520,624	1,702,124	1,862,895	2,065,941	2,248,268	9,399,852	
기타 (민간 자부담)							